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84
----------	------

제출연월일 : 2017. 0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주요 현안사항 등의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기능(안 제2조)
- 나.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안 제3조)
- 다. 기존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제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다.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입법예고기간 : 2017년 5월 1일 ~ 5월 12일(12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시정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주요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기관·단체의 연구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의안 제출) 위원 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부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관계인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
	팀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박춘오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지훈 (790-5070)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10.06 조례 제99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시민 화합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 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하남시시정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주요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시민대화합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계각층의 대표자,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이 꺾어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과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관·단체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③ 질병, 해외출장(6개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0조 (의안제출) 위원 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부위원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과 기타 관계인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하남시 시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동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